

벤처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벤처 활성화 방안

이 현 숙*
이 장 우**
김 한 열***
이 상 명****

1997년 8월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거듭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본 제도의 흐름과 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20,000여 개의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그 인증의 유형은 크게 '벤처 캐피탈 투자형' '연구개발형' '기술평가 보증/대출형'의 3가지로 나뉘며, 특히 2006년에 신설된 기술평가보증기업 유형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벤처확인제도는 서로 상이한 유형과 성장 단계 및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에게 동일한 벤처기업의 지위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에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본적인 두 가지 목표인 '(1) 건강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환경을 구축하여 시장 기능에 의해 벤처기업의 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2) 잠재력이 높거나, 우수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한다.'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벤처확인제도, 벤처 캐피탈, 벤처기업, 연구개발, 기술보증/대출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97년, 10년 한시법으로 벤처기업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벤처기업은 고용창출과 성장동력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1998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한 결과 벤처기업은 양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벤처기업은 생산·수출·고용 등 각 분야

에서 경제의 핵심 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등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7년, 정부는 10년 한시법인 벤처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벤처생태계 조성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2기 벤처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 벤처정책은 지난 1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벤처기

논문접수일: 2012. 01. 13. 1차 수정본 접수일: 2012. 02. 15. 게재확정일: 2012. 04. 10.

* 서울과학기술대학교(hlee@seoultech.ac.kr), 주저자

** 경북대학교(antonio@@knu.ac.kr)

*** 홍익대학교(hk3624@hongik.ac.kr)

**** 한양대학교(sanglee@hanyang.ac.kr), 교신저자

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및 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 및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성태경, 2005; 김수욱, 2010).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학술적 정의로 벤처기업이란 소기업으로 출발했지만, 독자의 존재 이유를 가지며, 경영자 자신이 고도의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업가정신을 보유하고, 고수익 및 급성장의 특성을 가진 기업군으로 정의된다(김세중, 2009).

이렇듯 벤처기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달리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기업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진다. 첫째,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상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높은 사업적 불확실성을 갖는다. 이러한 높은 사업적 및 기술적 불확실성은 위험회피 성향을 가지는 시장자본의 공급을 가로막고, 일반적인 금융자본이 벤처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게 한다. 둘째, 새로운 분야의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시장에서 원활히 얻을 수 없기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갖는다. 즉, 잠재적 외부투자자와 벤처기업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또는 정보보유의 격차로 인해 효율적으로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 셋째, 신생기업으로 기존 또는 새로운 시장에서 기존 기업과 경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쟁의 한계를 갖는다. 즉, 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토지, 자본 등의 유형 자산이나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신뢰가 기존 기업에 비해 부족하여 시장에서 경제적 약자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중소기업청, 200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국가 경제 및 사회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고 적절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유무형의 지원은 벤처기업과 관련된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궁극적으로 벤처기업 관련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박용주 외, 2010).

우리나라 벤처기업 관련 정책은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6년 코스닥 시장 설립 포함) 벤처 생태계가 정부 주도하에 육성이 되었다(중소기업청, 2009). 그 이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벤처기업은 전 세계적인 IT 산업의 붕괴, 벤처비리, 경기 위축이라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동시에 벤처기업 관련 자금시장이 위축되고 벤처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조정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정기를 거쳐 2005년 이후 벤처캐피탈 역량 및 투명성 강화 등 벤처기업의 시장 친화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선하여 이전까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져 왔던 벤처기업 확인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였다(김세중, 2008).

이러한 제도변화는 상기한 바와 같이 벤처기업의 역할에 대한 확대를 가져왔고, 양적인 면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벤처기업의 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벤처기업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인 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업가의 부도덕성과 기본적인 자질, 그리고 기업으로서의 역량 및 신뢰 부족의 문제들은 벤처에 대한 불신을 부추겨 왔고, 동시에 벤처기업 중에서도 정부 지원제도에만 의존하여 생존하는 “무늬만 벤처” 또는 “좀비형 벤처”가 많다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의 첫 출발점이 벤처기업이라는 기본적인 정의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벤처기업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인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즉, 동일한 혜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의 종류가 많은 것이다. 특히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를 유치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 (벤처캐피탈형) 과 단순히 정부출연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들 (보증/대출형)은 기업으로서의 잠재력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현 제도는 상이한 수준의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모두 '벤처'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확인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증 유형별 벤처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유형별 성과, 혁신성, 수출 비중, 기업가정신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상기한 바와 같이 '보증/대출형'의 경우 기술성 및 사업성 있는 기업의 선발이라는 벤처의 취지보다는 단순히 보증 및 대출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벤처기업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벤처확인제도 개편방안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벤처기업과 벤처확인제도

2.1 현행 벤처확인제도

벤처확인제도는 국가가 벤처기업의 정의 및 확인요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충족한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자금, 기술, 인력, 입지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법률에 의거하여 벤처기업을 직접 확인하고 유·무형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는 한국의 벤처확인제도가 유일하다. 이러한 벤처확인제도는 1997년 8월에 제정되어 2009년 1월까지 총 39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 그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러한 개정 과정의 주요 정책적 방향은 시장 친화적인 개선을 통

한 벤처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벤처확인제도에서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과정은 본 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벤처 확인을 위한 권한과 과정은 보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정부에서 민간 투자기관으로 이관되었고 현재 벤처기업이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 2>). 3가지 유형별로 상이한 기준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그 확인과 평가 역시 상이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2.2 현행 벤처확인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표 3>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수는 1998년 2,042개에서 2009년 18,893개로 급격한 양적 성장을 하였으며 2010년 9월 현재 벤처기업의 수는 22,944개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자료에 의하면 신규창업이 꾸준히 증가하여 벤처기업 전체에서 신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30.8%에서 2009년 43.6%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이라는 성과와 더불어 질적인 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벤처인증을 받은 후 매출 1,000억 이상을 달성한 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이상명, 2009). 작년의 경우 벤처인증기업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기업 수가 315여 개에 달하였다(중소기업청, 2011).

이러한 벤처기업의 양적/질적 성과는 기업성공에 대한 전통적 연구에서 사용되어온 기업가, 전략 또는 산업환경 등과 같은 개별 기업 차원의 변수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같은 제도적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Lee & Kang, 2010). 즉, 우리나라의 벤처관련 정책이 경제 전체에 기여한 역할 뿐 아니라,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 것이

〈표 1〉 벤처정책의 시기별 주요개정 사항

개 정 연 도	주요 개정사항
19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위기 이후 실업난 및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개정 - 벤처기업의 범위 확대(한국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등을 포함) 대학·연구기관의 창업활동 촉진 환경 개선
2000~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 촉진 및 고급 인력유입 확대를 위해 개정 -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다산벤처(주)의 설립근거를 마련 - 집단화·협업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 제도를 도입 -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M&A 활성화를 유도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 관련 비리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벤처특별법을 개정 - 연간 연구개발비, 개별 기술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를 추구하는 등 벤처기업 확인기준을 강화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확인제도를 변경하여 벤처기업 확인기관을 중소기업청장에서 민간투자기관으로 변경, 시장 친화적 제도로 개선 - 기존의 2단계 벤처기업 평가체계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및 기술평가보증과정에서 개별기업의 혁신능력이 충분히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1단계로 단순화함 - 벤처금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별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관리체계를 강화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특별법 유효기간의 종료(2007.12.31)에 따라 시한 연장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 강화 - 글로벌네트워크(민간설립)을 활용하여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및 벤처기업 기술제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 · 대학·연구소 등의 기술창업 활성화 환경 구축 - 대학특구 내 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 허용, 대학·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필수보유 발행주식 비율의 완화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일부 개정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벤처육성 - 단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고,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부품 및 소재 위주의 50개 품목 117개 기술을 중소 및 벤처기업형 유망 녹색 분야로 지정

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벤처인증기업이 이에 상응하는 미인증기업에 비해 수익성, 지속성, 혁신성, 글로벌화 및 고용창출 면에서 모두 성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이장우, 이현숙, 이상명, 장수덕, 2011).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현행 벤처확인제도 자체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

히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벤처기업 거품 논란은 벤처기업 중에서 진정한 기업가정신을 갖춘 제대로 된 벤처가 아니라 외양만 벤처의 형태를 갖춘 소위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의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벤처기업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부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었고 벤처 투자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표 2〉 벤처기업의 유형별 기준조건

벤처기업 유형	벤처기준요건	확인기관	평가기관
벤처투자기업 (벤처캐피탈형)	벤처투자기관 ¹⁾ 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²⁾ 위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형)	기술개발촉진법 제 7조 1항 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 직전 1년간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 연간 총매출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5% 이상으로 ³⁾ 정해진 기관의 평가에서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일 것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평가보증 및 대출기업 (보증/대출형)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며, ⁴⁾ 보증(대출)금액이 당해기업의 총자산의 5% 이상일 것 ⁵⁾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표 3〉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 현황

항 목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벤처기업수 (개)	2,042	4,934	8,798	11,392	8,778	7,702	7,967	9,732	12,218	14,015	15,401	18,893
증감률 (%)		141.6	78.3	29.5	-22.9	-12.3	3.4	22.2	25.5	14.7	9.9	22.7
신규 벤처기업수 (개)								3,002	4,304	5,359	6,329	8,237
신규 벤처비율 (%)								30.8	35.2	38.2	41.1	43.6

(신규벤처확인 기업수 = 신규벤처확인기업수(개) / 전체 벤처기업 수)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문제점이라는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 그 주요 요인이 인증제도 자체에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즉, 지나치게 다른 성격의

확인 절차(〈표 2〉)를 거친 기업들이 모두 '벤처'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현실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벤처확인제도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1)신기술 보유 벤처기

1) 창투자, 창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은, 기은, 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2)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0% 이상

3) 단, 3년 미만의 기업 제외

4) 단, 창업 후 1년 미만기업은 보증/대출 금액 4천만 원 이상, 총자산비율 요건 제외

5) 단, 보증/대출 금액 10억 이상인 경우는 제외

업 (2) 벤처투자를 받은 벤처기업(‘벤처캐피탈형’) (3) 연구개발 벤처기업(‘연구개발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왔었다. 이후 2006년부터는 이 세 가지 유형에 더하여 기술평가보증벤처기업과 기술평가대출벤처기업(‘보증/대출형’), 그리고 예비벤처기업의 세 가지 유형이 더해져 총 여섯 가지 유형으로 벤처기업이 확인되었다. 이후, 신기술보유 벤처기업은 2008년부터는 확인 유형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다섯 가지 유형의 확인 방법이 있으며, 각 유형별 기업 수의 변화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6년 새롭게 도입된 기술평가보증 및 기술평가 대출 벤처기업(‘보증/대출형’)의 수가 각각 2006년 1,491개 및 57개에서 2009년 15,783개 및 58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보증/대출 총계는 16,364개임). 특히 <표 5>에서 벤처기업 유형의 연도별 신규 확인 벤처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9년을 기준으로

보면, 기술평가보증기업이 91.8%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평가대출기업이 4.8%를 차지하여 이 두 유형이 신규 확인 벤처의 절대적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즉, ‘보증/대출형’의 비중이 ‘벤처캐피탈형’과 ‘연구개발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아 벤처확인 유형별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별 편중현상과 상이한 인증요건 등이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차이를 가지는 지를 다음 장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III. 현행 벤처확인유형별 차이분석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벤처확인제도의 유형별 분석을 보면 각각의 유형별로 그 기업 수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별 수적 차이가 기업 특성 및 성과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표 4>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현황

구 분	벤처기업 유형						합계
	신기술	벤처투자	연구개발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대출	예비벤처	
1998	964	494	584	-	-	-	2,042
1999	3,172	845	917	-	-	-	4,934
2000	6,575	1,393	830	-	-	-	8,798
2001	8,555	1,545	1,292	-	-	-	11,392
2002	6,329	1,124	1,325	-	-	-	8,778
2003	5,501	718	1,483	-	-	-	7,702
2004	6,109	442	1,416	-	-	-	7,967
2005	7,977	330	1,425	-	-	-	9,732
2006	8,500	367	1,548	1,491	57	255	12,218
2007	4,013	523	1,986	7,113	222	158	14,015
2008	-	604	2,320	12,097	348	32	15,401
2009	-	555	1,899	15,783	581	75	18,8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

〈표 5〉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신규 확인 벤처기업 현황

연도	구분	기술평가 대출기업	기술평가 보증기업	벤처 투자기업	연구개발 기업	창업 중인 기업 (예비벤처)	신기술기업	합계
2006	기업수(개)	52	1,257	57	164	184	2,590	4,304
	비중(%)	1.2	29.2	1.3	3.8	4.3	60.2	
2007	기업수(개)	152	4,860	79	211	37	20	5,359
	비중(%)	2.8	90.7	1.5	3.9	0.7	0.4	
2008	기업수(개)	179	5,957	70	194	29	-	6,329
	비중(%)	2.8	92.5	1.1	3.1	0.5	-	
2009	기업수(개)	397	7,559	58	169	54	-	8,237
	비중(%)	4.8	91.8	0.7	2.1	0.7	-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벤처기업협회에서 조사한 「200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200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2008년 12월 현재를 기준으로 15,253개의 벤처확인기업(예비 벤처기업 제외)을 조사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총 2,509개 벤처기업을 분석한 벤처기업 관련 최대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전체 벤처기업 확인 유형 5가지에서 성과 파악이 불가능한 창업 중인 단계의 예비벤처를 제외하고, 그 유형을 크게 벤처캐피탈투자기업(‘벤처캐피탈형’), 연구개발기업(‘연구개발형’),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보증/대출형’)로 나누었다. 조사된 벤처기업 중, ‘벤처캐피탈형’은 103개(5.0%), ‘연구개발형’은 278개(13.5%), 그리고 ‘보증/대출형’은 1,678(81.5%)로 나타났다. 이렇게 선별된 유형별 기업의 성과 및 전략적 행동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략적 행동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벤처기업 본연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험 감수와 도전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로 혁신역량, 수출 비중, 기업가정신의 세 가지 지표(이장우, 2010)를 이용하여 각 유형별 기업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3.1 벤처확인 유형별 성과차이

기업의 성과는 그 측정의 지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세 가지 지표로 각 유형별 기업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단일 년도만의 성과를 분석하게 되면, 지속기업으로서의 성과를 왜곡되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의 최근 3개년도 성과 지표를 평균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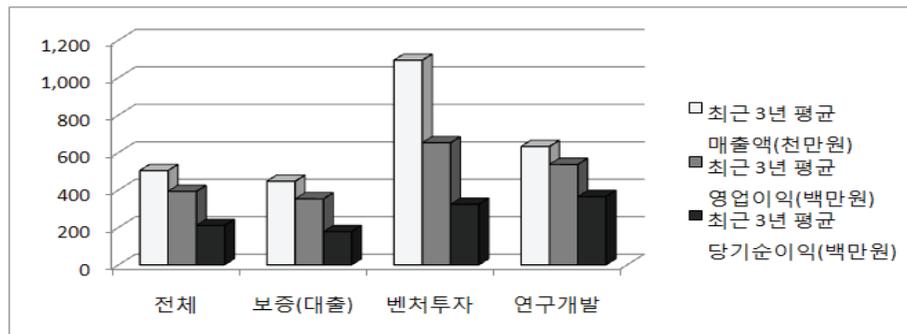
〈표 6〉, 〈그림 1〉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벤처확인 유형별로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경우 ‘벤처캐피탈형’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연구개발형’, ‘보증/대출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절대적 수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분석해 보았다(〈표 7〉). 분석의 결과 평균 영업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성과 변수들의 경우 확인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벤처캐피탈형’이나 ‘연구개발형’이 사례 수는 적지만 ‘보증/대출형’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 벤처확인 유형별 성과차이 비교분석

(단위: 백만 원)

구 분	전체	보증/대출형	벤처캐피탈형	연구개발형
평균 매출액(최근 3년)	5,033	4,458	10,933	6,316
평균 영업이익(최근 3년)	392	352	652	536
평균 당기순이익(최근 3년)	210	177	323	364



〈그림 1〉 벤처확인 유형별 성과차이

〈표 7〉 벤처확인 유형별 차이 - 성과비교

구 분		보증/대출형 1,678(81.5%)	벤처캐피탈형 103(5.0%)	연구개발형 278(13.5%)
성과 비교	3년 평균매출액 (p<.001)	0	0 0 0	0 0
	3년 평균영업이익	유의하지 않음		
	3년 평균 당기순이익 (p<.001)	0	0 0 0	0 0

(주) 0, 000 등은 차이를 도식화하여 표시한 것임

3.2 벤처확인 유형별 혁신역량 차이

벤처확인 유형별 혁신역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산업재산권과 해외 산업재산권의 등록 및 출원건수 그리고 매출액 대비 각종 국내 R&D 투자액 비중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표 8〉는 이에 대한 결과이다.

〈표 8〉, 〈그림 2〉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국내의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와 출원 건수의 경우 ‘벤처캐피

탈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구개발형’, ‘보증/대출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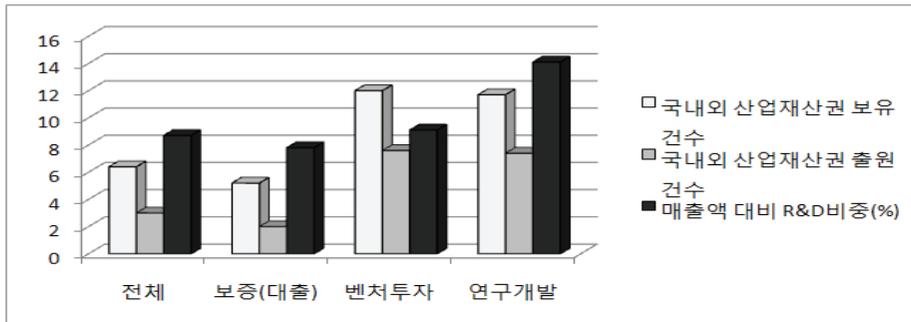
그리고 이들 확인 유형 간의 혁신역량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특히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의 경우 ‘연구개발형’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벤처캐피탈형’, ‘보증/대출형’의 순으로 나타나, 벤처 확인 유형에 따른 차이가 분명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캐피탈형’이나 ‘연구개발형’이

〈표 8〉 벤처확인 유형별 혁신역량 차이 비교분석

구 분	전체	보증/대출형	벤처캐피탈형	연구개발형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6.4(15.53)	5.2(12.41)	12.0(16.59)	11.7(26.61)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3.0(18.76)	2.0(5.50)	7.6(21.30)	7.4(47.25)
매출액 대비 R&D비중	8.7%(0.16)	7.8%(0.16)	9.1%(0.14)	14.1%(0.18)

주) ()안은 표준편차



〈그림 2〉 벤처확인 유형별 혁신역량 차이

〈표 9〉 벤처확인 유형별 차이 - 혁신역량 비교

구 분		보증/대출형 1,678(81.5%)	벤처캐피탈형 103(5.0%)	연구개발형 278(13.5%)
혁신역량	국내외 IP (p<.001)	0	0 0 0	0 0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p<.001)	0	0 0	0 0 0

(주) 0, 000 등은 차이를 도식화하여 표시한 것임

‘보증/대출형’에 비해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의 보유와 출원, 연구개발(R&D) 등 모든 부분의 혁신능력 지표에서 보다 적극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3.3 벤처확인 유형별 수출 비중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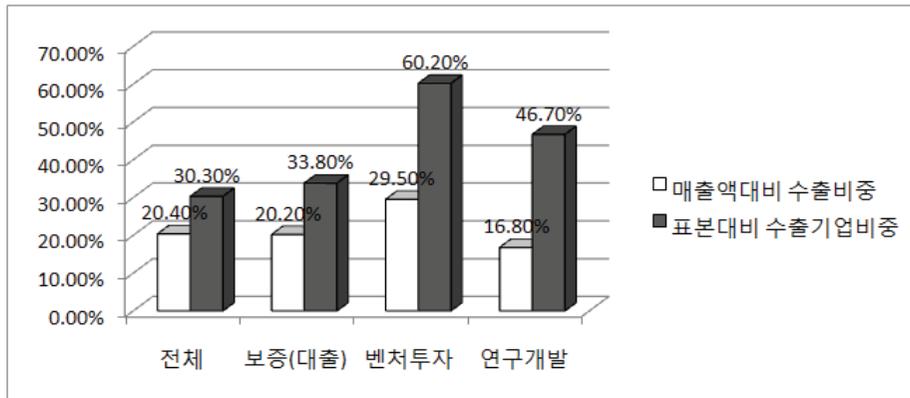
벤처확인 유형별 도전정신의 차이를 글로벌화 정도의 차이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글로벌화의 정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2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10〉, 〈그

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벤처캐피탈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증/대출형’, ‘연구개발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11〉에서 보여주듯이 이러한 수치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한편, 각 유형별 표본수와 대비해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보증/대출형’의 경우 표본 중에서 33.8%만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벤처캐피탈형’과 ‘연구개발형’은 각각 60.2%와 46.7%로 나타나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큰 것을

〈표 10〉 벤처확인 유형별 수출 비중 차이 비교분석

구 분	전체	보증/대출형	벤처캐피탈형	연구개발형
매출액대비 수출 비중	20.4%(26.93)	20.2%(27.11)	29.5%(30.44)	16.8%(23.41)
표본 수(표본대비 %)	760개(30.3%)	568개(33.8%)	62개(60.2%)	130개(46.7%)

주) ()안은 표준편차



〈그림 3〉 벤처확인 유형별 수출 비중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벤처캐피탈형’ 벤처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액 대비 30% 가가이 를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벤처캐피탈형’의 기 업의 약 60%가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개발형’의 경우에도 매출액 대 비 수출 비중은 낮지만,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해

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보증/대 출형’의 경우 수출을 하고 있는 절대적 수치로서의 표본 수는 568개로 많아 보이나, 이는 샘플의 수가 많아 그 숫자가 커 보이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33% 정도의 기업만이 해외 시장 진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벤처확인 유형별 차이 - 수출 비중 비교

구 분		보증/대출형 1,678(81.5%)	벤처캐피탈형 103(5.0%)	연구개발형 278(13.5%)
수출 비중	최근2년간 매출액대비 수출 비중 (p<.01)	0 0 (20.2%)	0 0 0 (29.5%)	0 ⁶⁾ (16.8%)
	수출기업 비중	0 (33.8%가 수출)	0 0 0 (60.2%가 수출)	0 0 (46.7%가 수출)

(주) 0, 000 등은 차이를 도식화하여 표시한 것임(자세한 수치는 본문 내용 참고)

6) ‘연구개발형’들은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낮지만 ‘연구개발형’의 약 50%가 수출을 하고 있음

3.4 벤처확인 유형별 기업가정신 차이

벤처확인 유형별 전략적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수준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해 보았다(〈표 12〉). 5점 척도로 된 기업가정신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혁신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p < .05$) 반면, 공격성이나 위험감수성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13〉).

또한, 〈표 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 지표의 경우, 보증/대출형은 단순히 평균값만이 낮은 것이 아니라 표준편차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유형의 벤처확인 기업들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다른 유형보다 넓게 흩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즉, 혁신성이 매우 높은 기업부터 지극히 낮은 기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혁신성의 경우 '벤처캐피탈형'과 '연구개발형'이 '보증/대출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벤처캐피탈형'이나 '연구개발형'은 '보증/대출형'에 비해 제품혁신이나 공정혁신과 같은 기술혁신, 조직혁

신, 연구개발, 서비스혁신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전략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5 현행 벤처확인 유형별 차이의 원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이라는 동일한 인식을 받고 있는 기업군내에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각 유형별 성과 및 기업 행동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현행 벤처확인제도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발굴 및 육성한다'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서로 상이한 유형과 성장 단계, 그리고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에게 하나의 동일한 벤처기업으로서의 지위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도의 전문능력, 창조적 재능, 기업가정신을 살려 대기업에서는 착수하기 힘든 특수한 신규 사업에 도전하는 연구개발형 신규기업"이라는 벤처기업 본연의 정의에 맞는 건실한 기업과, 이러한 벤처기업 본연의 특성을 갖고 있

〈표 12〉 벤처확인 유형별 기업가정신 차이 비교분석

구 분	전체	보증/대출형	벤처캐피탈형	연구개발형
혁신성	3.62(0.61)	3.60(0.61)	3.70(0.59)	3.70(0.57)
공격성	3.28(0.66)	3.28(0.67)	3.33(0.64)	3.29(0.67)
위험감수성	3.30(0.69)	3.30(0.70)	3.32(0.60)	3.32(0.70)

주) ()안은 표준편차

〈표 13〉 벤처확인 유형별 차이 - 기업가정신

구 분		보증/대출형 1,678(81.5%)	벤처캐피탈형 103(5.0%)	연구개발형 278(13.5%)
기업가정신	혁신성 ($p < .05$)	0	0 0 0	0 0 0
	공격성	유의하지 않음		
	위험감수성	유의하지 않음		

(주) 0, 000 등은 차이를 도식화하여 표시한 것임

지 않는 기업들이 혼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는 시장에 벤처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벤처 본연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까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문제점으로 연결된다. 즉,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벤처기업들이 소위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과 혼재되어 있음으로써 성장에 필수적인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벤처지원제도의 본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가 불분명하여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

어, 벤처기업의 육성에 필수적인 벤처캐피탈의 성장 또한 저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벤처확인기준 자체의 다양성에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부산하기관으로 벤처인증을 담당하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기술평가보증/대출 유형의 경우, 그 평가기준에 있어서 미래의 성장성보다는 과거의 성과와 현재의 경영 상태에 상대적으로 많은 배점이 주어지고 있다(〈표 14〉). 즉 벤처기업 고유한 특성인 기술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지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표 14〉 기술평가보증/대출을 위한 벤처기업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25 점)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6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5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5		
소 계			25		
기술성 (43 점)	기술개발환경	개발전담조직	5		
		개발인력비율	5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5		
		핵심기술보유현황	5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기술의 우수성	7		
		생산시설확보수준	5		
		생산인력확보수준	4		
	자금조달능력	7			
소 계			43		
사업성 (32 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7		
		타제품과의 비교 우위성	7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4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4		
	수익전망	매출액경상이익률	5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		5			
소 계			32		
합 계			100		

※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 3/5, D: 배점 × 2/5, E:배점 × 1/5)

결과 '보증/대출형'형의 기업들의 성과가 여타의 벤처확인 기업들보다 낮으며, 경영성과의 원인지표라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지표 역시 여타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이 유형 확인을 위한 몇몇 지표들은 벤처기업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벤처기업지원특별법 등 정부 지원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경영능력, 기술개발 환경, 기술개발 실적, 기술 제품화 능력 등과 같은 항목들은 신생 벤처기업보다는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해 온 기업일수록 당연히 더 확보되어 있는 지표이다. 요컨대, 업력이 길고 자원을 많이 확보한 안정적인 기업들이 비록 벤처기업의 중요한 정의인 혁신성이 낮은 경우에도 벤처기업의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벤처확인제도는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아 벤처 인증을 받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고, 보증/대출로 인증받기는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용이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한국산업기술재단, 2009). 즉, 벤처캐피탈 업체들은 투자회수와 수익성에 기초해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가질 수 있는 우수 신생벤처기업들을 걸러내게 되고,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의 '경영관리능력', '자금조달능력', '경영자의 자질', 및 '마케팅 전략의 적절성' 등과 같은 경영능력이나 '기술개발환경' 등과 같은 사내 인프라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어 기술력과 잠재력 있는 우수 신생벤처기업들을 걸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 본연의 목적에 맞는 도전을 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벤처 인증을 받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게 되어있는 것이다.

IV. 벤처확인제도의 개선방안

4.1 벤처확인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두 가지 큰 목표는 (1) 건강한 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환경을 구축하여 시장 기능에 의해 벤처기업의 창업과 이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2) 잠재력이 높거나, 우수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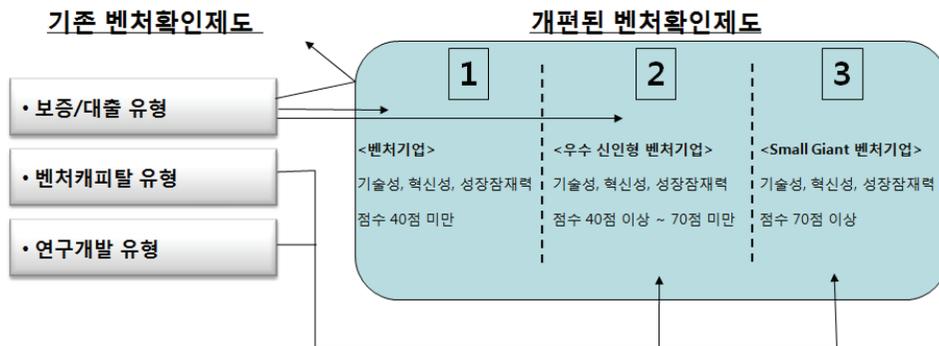
현행 벤처확인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확인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아니라 확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즉, 보증/대출형의 벤처확인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그 평가 기준이 현재의 경영 안정성에 맞춰지게 됨으로써 미래 성장성에 문제가 있는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벤처로 유입된다는 점과, 벤처캐피탈 및 연구개발형의 벤처확인이 가지고 있는 인증평가의 지나친 엄격함과 보수성이 실제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데 있어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이중적 잣대가 벤처확인제도라는 동일한 틀 안에서 혼재되어 두 기준이 가지는 이상적인 제도적 분업화를 이루지 못하는데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벤처기업 육성제도의 목적인 '잠재력 높은 우수 신인형 벤처기업의 발굴'과 '우수한 벤처기업의 육성'이 서로 상충되거나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즉 '우수 신인형 벤처기업'의 발굴은 벤처캐피탈의 엄격한 심사 및 보증/대출형의 기술혁신성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평가기준에 가로막히고 있는 한편, '우수 벤처기업(Small Giant)'의 경우에는 그 기업군에 맞는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군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정책 자금이 오히려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

지 않은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초기 벤처기업의 진입저해와 피인증 기업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나아가 이는 투자기관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벤처확인제도의 부가적 목적까지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벤처 창업뿐 아니라 벤처투자시장의 활성화까지도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벤처확인제도의 개선 방향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명확히 분리하고 해당역할을 각 확인유형 별로 나누어 분업화 및 전문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벤처기업 본연의 정의에 부합하는 특성 즉, 기술성, 혁신성, 성장잠재력의 기준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고⁷⁾(이장우, 2010),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벤처확인 유형에 따라 성과나 성장잠재력이 상이함으로 이를 반영하여 그동안 동일하게 주어졌던 벤처기업의 지위와 혜택을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즉, 신규 벤처기업들은 물론 기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도 기술성과 혁신성, 그리고 성장

잠재력(수출 비중)이 높은 우수한 벤처기업들을 위한 선별적인 기업군 형성(Grouping) 및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Simon, 2008).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보증/대출 유형의 기업들 중에서 벤처기업의 특성 및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군에 들어올 수 없도록 기술성, 혁신성, 성장가능성에 대한 선별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벤처기업군에 진입한 기업들 중에서 우수한 기업군을 크게 우수 신인형 벤처기업군과 Small Giant 기업군으로 구분하여 총 3개의 기업군(일반벤처기업, 우수 신인형, Small Giant형)을 벤처확인제도 내에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히든 챔피언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Small Giant(우수 벤처기업)군은 기술성, 혁신성, 성장가능성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대표적인 벤처기업의 사례로 성장될 기업을 의미한다(박천규, 2004; 이장우, 2009; 중소기업진흥공단, 2010).



<그림 4> 개편된 벤처확인제도의 도식화

7) 정부의 벤처기업의 정의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우수한 벤처기업(한국형 히든 챔피언)이 가져야 할 요건을 본 연구에서는 기술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주요 영역은 우리나라의 성공한 강소기업(한국형 히든 챔피언)의 특성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되었다.

4.2 기술평가보증/대출형 확인제도 개선:

우수 신인형 벤처기업의 발굴

기술평가보증/대출형의 벤처확인 은 대출 및 보증이라는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유형의 투자를 통한 벤처확인이다. 이로 인해 다른 벤처투자유형에 비해 진입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 방식은 경영능력, 기술개발환경, 기술개발실적, 기술제품화능력 등 과거의 성과와 현재의 경영상태에 평가기준이 치우친 나머지, 벤처기업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 중소기업들까지도 이 제도를 통하여 벤처확인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우수 신인형 벤처기업의 발굴'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의 특성인 기술성, 혁신성, 성장잠재력이 부족한 일반기업의 진입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의 평가기준은 기술혁신보다는 경영능력에 비중이 주어져 있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를 개선하여 평가기준에 기술성, 혁신성, 잠재력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영자의 자질 및 능력' 등의 항목 중요도를 낮추거나 기업의 업력을 제한하는 등의 배제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표 15참조〉).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점수(약 40점 이상 70점 미만)에 도달하게 되면 '우수 신인형 벤처기업'으로 명명하고 이를 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벤처캐피탈이 우수한 벤처기업군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이들 기업 중 탁월할 기업군을 'Small Giant형'기업군으로 명명(70점 이상)하고,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지위를 차지하도록 하게 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 신인형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Small

Giant형 기업군'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 벤처기업이 부족한 '경영역량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거나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올랐을 때 벤처캐피탈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과 벤처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4.3 벤처캐피탈형 확인제도 개선: Small Giant의 육성

기술평가대출이나 보증보다 리스크가 큰 직접투자를 담당하는 벤처캐피탈 업체는 필연적으로 비교적 엄격한 투자심사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들 민간기구의 투자행위를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벤처확인의 민간기관 기관은 이러한 엄정한 투자심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벤처투자기업 유형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것 또한 이 유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운용형태를 보았을 때, 벤처캐피탈투자유형의 벤처확인 은 신생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에는 적합하지 않다. 상기한 기술평가보증/대출 유형의 벤처인증이 벤처기업의 특성을 지닌 기업의 선발 및 우수 신인형 벤처기업의 발굴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벤처캐피탈형 벤처확인제도는 별도의 변화를 가하기보다는 현행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Small Giant'의 육성으로 그 활동영역을 확정 짓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 영역에 대한 정부정책은 'Small Giant'형 기업군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지원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기업공개시 혜택, 가업승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과 같은 개별 벤처캐피탈 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정부가 담당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지원은 모든

기업에 필요한 지원이겠지만, 이 유형에 속한 기업들의 성장 단계에 보다 적합한 제도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그 동안 상대적으로 벤처확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생 벤처기업들에게 벤처확인 기회 제공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과성장한 기업군들에게 이에 적합한 지원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정의에 맞는, 그리고 육성하고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만을 지원하는 벤처확인 및 지원제도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4.4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이러한 큰 틀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운영상의 효율성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벤처인증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벤처확인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가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벤처기업의 협조 부족 등의 원인으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벤처기업 관련 사업이나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들의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Wisconsin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 “Qualified New Business Venture” 등이 참고가 될 것이다. 창업 초기 기업들이 그 불확실성 때문에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기가 어려워지고, 이러한 점이 창업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자, 주 정부

가 신생벤처기업들을 인증해주고 이를 통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Qualified New Business Venture” Pool을 만들어졌다. 이 제도에서는 혜택을 받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기업정보를 온라인에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되고 있고, 이렇게 업데이트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받은 기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온라인에서 기업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벤처확인기업들의 정보 확보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본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현행 벤처확인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분석에 있어 실질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한 것은 본 논문의 중요한 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특정 년도의 데이터에 국한되었고, 몇 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 유형별 기업의 특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지 못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가 될 수 있다. 벤처기업실태 조사의 대상 기업 자체가 매년 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상기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이러한 학술적 의미에서의 문제점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 특히 변화가 급격한 벤처영역의 경우, 어제의 최선의 제도가 현실의 발목을 잡을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세중(2009), 불황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 김세중(2008), 벤처기업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 김수욱(2010),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벤처경영연구**, 13(1), 87-114
- 박용주, 최미희, 윤성식, 이경미, 정근주(2010), 벤처기업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 박천규(2004), 강소 기업의 5가지 성공비결, 동향자료, LG경제연구원.
- 성태경(2005), 벤처기업은 항상 혁신적인가?-KIS 2002에 근거하여, **벤처경영연구**, 8(1):117-139
- 이상명(2009), 1,000억 클럽 성장 모형, 과학기술정책포럼.
- 이장우, 강용운(2009), 중국 벤처기업의 국제화: 해외시장 진출방식을 중심으로, **경영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 제24권 23호 통권 63호 pp. 61-91
- 이장우(2010), 대한민국 강소기업: 작지만 강한기업, 그들만의 혁신전략, 서울, 미래인.
- 중소기업진흥공단(2010), 강소기업의 특성과 육성전략 및 중진공의 역할, 한국중소기업학회.
- 이장우, 이현숙, 이상명, 장수덕 (2011), 벤처확인제도 개편방안 연구,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2009),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대책(안).
- 중소기업청(2008),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2011), 2011년 1,000억 벤처기업 현황조사, 중소기업청.
- 한국산업기술재단(2009), 중소기업의 R&D 투자전망보고서, 서울, 한국산업기술재단.
- Lee & Kang (2010), "Main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and the Impact of Governmental Policie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Management*, 12(3): 311-329
- Simon(2008), 세계를 제패한 숨은 1등의 기업-히든챔피언, 흐름출판.

Evaluation and Suggestions on Venture Policies in Korea

Hyunsuk Lee* · Jang-Woo Lee** · Han-Earl Kim*** · Sang-Myung Lee****

Abstract

Venture companies began to proliferate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Measures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 in August 1997. Since then they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Korean economy as an engine of growth and a platform creating job opportunities.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on venture compan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volution, effectiveness, and problem of the venture company certification policy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Approximately 20,000 firms have been certified as venture companies so far. Certification categories include (1) firms funded by venture capital, (2) firms with heavy R&D investment, and (3) firms sponsored by either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or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Among the three, the number of firms belonging to the last category, which was introduced in 2006, has significantly increased. Despite the wide acceptance of the certification program, its effectiveness as a mechanism for disseminating information about venture companies has been criticized because it fails to provide measures specific to venture companies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development stage, and performance.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e limits of the current program suggests that some measures need to be seriously considered in order to achieve the following two objectives of government support for venture companies: (1) creating the ecosystem for venture companies so that the market for venture companies and capital functions properly, and (2) enhancing the Korean economy through government support directed toward venture companies with high potential and/or superior technology.

Key Words: Venture Certification, Venture Capital, Venture Companies, R&D, Technology Credit Guarantee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Hongik University

**** Hanyang University